

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가목에서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·단체 등'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
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'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사를 말한다.

1.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참가할 것
2.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전체 참가자의 30% 이상이고, 외국인 참가자 수가 1,000명 이상일 것

③ 법 제2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쓰레기 처리 등 위생관리시설
2.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
3.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시설

제3조(국제문화행사심사위원회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의 국제문화행사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문화행사심사위원회(이하 ‘심사위원회’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법 제2조제1항가목 및 나목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
2. 법 제2조제1항다목에 따른 행사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제문화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.

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

1.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제문화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2. 관계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제문화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3. 문화예술·문화콘텐츠·관광·국제협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⑧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

제4조(국제문화행사개최계획서 제출) ① 국제문화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국제문화행사로 인정받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국제문화행사개최계획서와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목적 및 취지
2. 국제문화행사의 개최일시, 장소, 내외빈 초청범위, 행사 소요인력 및 대책 등의 개요

3. 당해 국제문화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자원 및 자원조달 대책
 4. 국제문화행사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및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
 5. 국제문화행사 후 잔존시설물별 세부 활용계획, 사후 관리비용 추계 및 비용조달 계획
 6. 그 밖에 당해 국제문화행사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정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가 동일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전 인정 이후 제1항 각 호의 중대한 변경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5조(인정 취소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
2. 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
제6조(국제문화행사개최계획 변경) 제4조에 따라 국제문화행사로 인정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국제문화행사개최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개최자 변경
2. 개최 목적, 취지 및 자원조달계획의 중대한 변경

제7조(조직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.

- ②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, 부위원장,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둔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, 임기 및 선출 방법, 집행위원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④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⑤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)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.

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9조(수익사업)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국제문화행사 관련 문화·예술행사 등의 입장권 판매사업
2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행사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0조(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)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다른 기관·법인·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.

1. 국제문화행사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·보수하는 경우

2.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1조(국제문화행사 지원단) ① 지원단의 구성 등에 필요한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

제1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,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■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 금액을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	법 제19조	200	300	500

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하거나 광고,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자	제1항			
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			
가. 조직위원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	200	300	500
나. 조직위원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	100	200	300